

3.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307호 1999. 5. 1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199. 3. 31, 법률 제5956호)되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 안에서 지장물등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물 등의 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이 그 권리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제35조제2항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로 한다.

제37조, 제39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